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필모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67

발의연월일: 2022. 8. 16.

발 의 자:정필모·김경만·조승래

김영호 • 이용빈 • 이정문

문진석 • 김성주 • 민형배

김두관 • 양이원영 • 이 형석

변재일 • 안규백 • 송재호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학문·기술 간 연계를 통한 융합연구의 필요성이 현대과학기술분야에서 강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지난 2014년 출범 이래 국가·사회적 현안해결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융합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융합연구사업은 지난해까지 7년 동안 누적 논문 2,221건, 누적 특허 2,458건 등 양적 성과를 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후 보물질 개발과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 개발 등 대형기술이전과 국가· 사회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특히 융합연구사업은 사업참 여자들에게 연구몰입도 향상, 이종 분야 기술·지식 습득, 연구 시너지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융합연구의 성과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융합연구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998억 원에서 2019년 835억 원, 2021년 819억 원으로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임. 이로 인해 잠재성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연구과제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사업에서 안타깝게도 대거 탈락하는 상황임.

아울러 공공 연구는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민간 연구기관이 아닌 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영역임. 그러므로 국가·사회적 현안 해결 등 공공이익 실현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이 융합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융합연구사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재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연구기관 간 융합혁신생태계가 확대될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호 및 제21조의2 신설, 제24조제2항제6호).

법률 제 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연구기관의 협동·융합 연구"로 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협동·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또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동·융합연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을 "연구기관의 협동 • 융합연구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사업) 연구회는 제1조의	제21조(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4.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
위한 지원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1조의2(협동ㆍ융합연구사업)
	① 연구회는 연구기관 간 또는
	2개 이상의 연구기관 및 국내
	외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동・융합연구를 촉진하
	기 위한 협동・융합연구사업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
	<u>다.</u>
	② 제1항에 따른 협동ㆍ융합연
	구사업의 운영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u>충당한다.</u>
제24조(이사회) ① (생 략)	제24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②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	
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 항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1. ~ 5. (생략)
-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7. ~ 9. (생략)
- ③ ~ ⑥ (생 략)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	-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_	_	_	_	_	_	_	_	_	_

- 1. ~ 5. (현행과 같음)
- 6.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6. 연구기관의 협동・융합연구
 - 7. ~ 9. (현행과 같음)
 - ③ ~ ⑥ (현행과 같음)